



비상구 폐쇄 ·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,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**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**를 시행합니다.

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

다중이용업소, 판매시설, 복합건축물, 운수시설, 숙박시설,
근린생활시설, 노유자시설, 문화집회시설, 의료시설, 위락시설

주요위반사례



도어스토퍼 설치



도어클로저 훼손



물건적치



비상구폐쇄

-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 · 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
- 계단,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
-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

※ 소방시설 등 고장을 미끼로 공갈 협박,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 허위신고 발견시 119 또는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의왕소방서